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-

# 제 안 설 명 서

2019. 7.



홍복조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홍복조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 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현행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#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8조에서는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·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**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9. 6. 14일부터 2019. 6. 26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-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,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,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**
- **감사합니다.**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

## (홍복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7199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19. 6. 13.

발의자: 홍복조, 안대국, 이신자, 윤권근, 정창근  
배용식, 김태형, 김화덕, 김정윤, 박정환

### 1. 제정이유

현행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4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- 가. 사유: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- 나. 근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

### 5. 관계법령: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,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급식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
2. “급식에 관한 경비”(이하 “급식경비”라 한다)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, 급식운영비 등 학교 급식의 운영과 식재료의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
3. “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”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,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·축·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, 품질인증품
  - 나.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
  - 다.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
  - 라. 그 밖에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

**제3조(지원대상)**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

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
2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
**제4조(지원범위)**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**제5조(지원신청)** 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
  2. 급식시설, 설비의 위치와 규모
  3.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
  4. 급식 시행 계획
  5.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
  6.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
-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원심의)**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, 지원규모와 내역,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

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**제7조(지원대상자 등의 의무)**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도·감독)**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」 제6조의 심의사항

## 【관 계 법령】

### □ 학교급식법

**제4조(학교급식 대상)**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
### □ 초·중등교육법

**제2조(학교의 종류)**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#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**제8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계획 심의
2.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 조정
3.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
4. 보조금의 지원 규모
5.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